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

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!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

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?

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!



| 신고 시행일 |

2021년 6월 1일(화)

| 신고 의무인 |

임대차계약당사자 : 임대인·임차인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

| 신고 대상 |

❶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

❷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
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
| 신고 서류 |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
| 신고 방법 |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(읍·면·동·출장소) 방문신고

| 제재 사항 |

미신고(지연사례 포함)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(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)

※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

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-0149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 또는
관할 기초지자체(읍면동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